

# 합동전자

## 분쟁광물(책임광물) 규정

## - 목 차 -

I. 개요

II. 분쟁광물

III. 책임광물

IV. 부칙

# I 개요

## 제 1 조(목적)

합동전자(이하 "회사")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 개국 분쟁국가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을 포함한 특정 광물 (이하 "분쟁광물") 및 코발트 의 판매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대상국가의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을 수립한다.

## 제 2 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하며,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제 3 자도 함께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 제 3 조(용어의 정의)

①분쟁광물 :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금,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한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 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 안 1502 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책임광물 : 분쟁광물 외에도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을 지칭한다.

# II 분쟁광물

## 제 4 조(분쟁광물 관리 정책)

- ①회사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조달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④회사는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회사는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회사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함께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 제 5 조(협력업체 및 계약업체에 대한 요청)

- ①협력사는 회사의 "분쟁광물(책임광물) 규정"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여야 한다.
- ②협력사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 주식회사 합동전자 분쟁광물(책임광물)규정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③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협력사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III 책임광물

#### 제6조(책임광물 관리 정책)

회사는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아동 인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물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광물 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IV 부칙

####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